

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

제 호			통보 연월일	
법령 정비 요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	
	주소			
	대표자명	전화번호		
규제소관 행정기관의 검토의견	규제 소관기관/ 담당부서(과)			
	규제 대상 사업 명칭 및 내용			
	규제 법령			
	법령 정비 필요 여부	필요함 [] 필요하지 않음 []		
	검토의견 주요내용(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,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소관부처 처리 결과 등)			
그 밖의 안내 사항	※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·도지사등이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(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)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제6항·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